

-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재 난 안 전 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목 차

1. 세입 예산안	
가. 총 괄	
나. 자원별현황	
2. 세출 예산안	
가. 총 괄	
나. 소관부서별내역	
- 안전정책과	
- 사회재난과	
- 자연재난과	
3. 명시이월	
4. 검토의견	

2023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안

가. 총괄

-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1,862억 8,330만원) 대비 7.18%인 133억 7,835만원이 감액된 1,729억 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3,627억 434만원의 2.72%에 해당하는 규모임

【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제3회 추경	증감률
충청북도	6,362,704,344	100	6,536,975,815	100	△ 174,271,471	△ 2.67
재난안전실	172,904,958	2.72	186,283,308	2.85	△ 13,378,350	7.68
재난안전실	172,904,958	100	186,283,308	100	△ 13,378,350	△ 7.18
안전정책과	8,413,065	4.87	8,412,439	4.52	626	0.01
사회재난과	396,593	0.23	296,209	0.16	100,384	33.89
자연재난과	164,095,300	94.90	177,574,660	95.32	△ 13,479,360	△ 7.59

나. 재원별 현황

-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0.95%, 지방교부세 9.63%, 보조금 68.51%, 보전수입 등및내부거래 20.91%로 구성되어 있음

- 세외수입은 16억 3,9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1.0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및 하천사용료 등 정상적 세외수입 반영분임
- 지방교부세는 166억 5,1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3%인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사업 등을 반영함
- 보조금은 1,184억 5,34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53%인 496억 2,5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7.9.~7.19. 호우피해 복구 및 재난 지원금, 8.9~11. 제6호 태풍 카눈 재난 지원금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함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1억 5,988만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반영분임

【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안 자원별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기정액		제3회 추경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72,904,958	100	186,283,308	100	△ 13,378,350	7.18
세 외 수 입	1,639,697	0.95	1,638,687	0.88	1,010	0.06
지 방 교 부 세	16,651,940	9.63	16,551,940	8.89	100,000	0.60
보 조 금	118,453,441	68.51	168,078,801	90.23	△ 49,625,360	△ 29.5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6,159,880	20.91	13,880	0.01	36,146,000	260,417.8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3,076억 3,484만원) 대비 △9.95%인 306억 229만원이 감액된 2,770억 3,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3,627억 434만원의 4.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감소율 △2.6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재난안전실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구성비	기정액		제3회 추경	증감률
			기정액	구성비		
충청북도	6,362,704,344	100	6,536,975,815	100	△174,271,471	△2.67
재난안전실	277,032,545	4.35	307,634,844	3.58	△30,602,299	17.56
재난안전실	277,032,545	100.0	307,634,844	100.0	△30,602,299	△9.95
안 전 정 책 과	4,274,346	1.54	4,314,346	1.40	△40,000	△0.93
사 회 재 난 과	955,317	0.34	869,317	0.28	86,000	9.89
자 연 재 난 과	271,802,882	98.11	302,451,181	98.31	△30,648,299	△10.13

- 재정별로 살펴보면,
 - 정책사업비는 2,535억 4,82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7%인 305억 8,8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232억 6,711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 행정운영경비는 2억 1,72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5%인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재정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제3회추경	증감률
계	277,032,545	100	307,634,844	100	△ 30,602,299	△ 9.95
정 책 사 업 비	253,548,210	91.52	284,136,509	92.36	△ 30,588,299	10.77
재 무 활 동 비	23,267,115	8.40	23,267,115	7.56	0	0.00
행 정 운 영 경 비	217,220	0.08	231,220	0.08	△ 14,000	△ 6.05

나. 소관 부서별 내역

○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재난안전실 예산안의 1.54%로 기정예산액 43억 1,434만원 대비 △0.93%(4,000만원) 감액된 42억 7,4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3회 추가경정예산 대상사업 중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7.9.~7.19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6,000만원임

【 안전정책과 주요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합 계	기정액	제3회추경	증감률 (재원)
7.9.~19. 호우 피해 복구사업(임시주택조립)	60,000	100,000	△ 40,000	△ 40.00% (국비)

○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재난안전실 예산안 2,770억 3,254만원의 0.34%로 기정예산액 8억 6,931만원 대비 8,600만원(9.89%) 증액된 9억 5,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순증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사업 1억원이 있음

【 사회재난과 주요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합 계	기정액	제3회추경	증감률 (재원)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사업(안전점검 S/W구입, 안전점검 장비 구입)	100,000	-	100,000	순증 (특교세)

○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재난안전실 예산안 2,770억 3,254만원의 98.11%로 기정예산액 3,024억 5,118만원 대비 306억 4,829만원(△10.13%)이 감액된 2,718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순증 신규사업으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사업 18억 3,659만원 및 재난지원금 2억 9,307만원 및 병천천 재해복구사업 7억 2,400만원, 회인천 재해복구사업 9억원 등이 있고, 주요 증감사업으로 7.9.~19.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복구사업비 등 국·도비를 반영함

【 자연재난과 주요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합 계	기정액	제3회추경	증감률 (재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1,468,195	21,508,545	△40,350	△0.19 (국·도비)
7.9.~19. 호우피해 복구사업(국가하천)(환경부)	5,969,910	6,124,663	△154,753	△2.53 (국비)
7.9.~19. 호우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환경부)	832,008	16,379,275	△15,547,267	△94.92 (국·도비)
7.9.~19. 호우피해 복구사업(소하천)(행안부)	2,363,543	22,410,026	△20,046,483	△89.45 (국·도비)
7.9.~19. 호우피해 복구사업(행안부 기타 시설)	913,070	2,218,682	△1,305,612	△58.85 (국·도비)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성립전)	293,075	0	293,075	순증 (국·도비)
태풍 카눈 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	1,836,591	0	1,836,591	순증 (도비)

사업명	합계	기정액	제3회추경	증감률 (재원)
(자체)				
병천천 재해복구사업(개선)	724,000	0	724,000	순증 (도비)
회인천 재해복구사업(개선)	900,000	0	900,000	순증 (도비)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8,915,000	6,226,000	2,689,000	43.19 (국비)
미평천 수해상습지개선 국유재산사용료	3,500	0	3,500	순증 (도비)

3. 명시이월

○ 재난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 안전정책과 1개 사업 9억 4,880만원,
- 사회재난과 1개 사업 1억원,
- 자연재난과 24개 사업 158억 530만원,

총 26개 사업 168억 5,41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음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사유
합계	81,340,918	16,854,107	
안전정책과	1,000,000	948,800	
총무시설보강사업	1,000,000	948,800	절대공기 부족
사회재난과	100,000	100,000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 강화 사업	100,000	100,000	사전절차이행
자연재난과	80,240,918	15,805,307	
7.9.~19. 호우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	5,969,910	5,969,910	국비미교부
7.9.~19. 호우피해 복구사업(지방하천)	832,008	832,008	국비미교부
병천천 재해복구사업	724,000	724,000	절대공기 부족
회인천 재해복구사업	900,000	900,000	절대공기 부족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11,128,000	1,100,000	사업계획변경
대전천 대전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6,381,000	200,000	보상협의 지연
석남천 석남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3,810,000	102,000	준공시기 미도래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2,630,000	272,000	보상협의 지연
한계천 한계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8,789,000	188,111	준공시기 미도래
안내천 아내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2,000,000	107,200	보상협의 지연
장평천 봉양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9,417,000	1,386,051	사전절차 이행
소여천 소여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1,500,000	16,500	준공시기 미도래
사이곡천 사이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3,184,000	153,000	준공시기 미도래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2,000,000	720,800	보상협의 지연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3,325,000	1,032,324	사업계획변경
용화천 용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3,000,000	120,000	준공시기 미도래
문방천 문방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2,000,000	353,000	절대공기 부족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3,649,000	101,000	준공시기 미도래
미호천 선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785,000	90,000	사업계획변경
원박천 원박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2,450,000	140,000	준공시기 미도래
대전천 괴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2,000,000	1,011,840	사업계획변경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100,000	100,000	준공시기 미도래
하천기본계획수립	1,661,000	155,563	계약(납품)지연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2,006,000	30,000	보상협의지연

4. 검토의견

-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종정리를 위한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정리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및 성립전 예산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임
-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및 「자연재해대책법」과 「하천법」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난 7.9.~19. 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긴급복구 사업비 등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